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김동욱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1998호

다. 제출일자 : 2024. 8. 12.

라. 회부일자 : 2024. 8. 14.

2. 주 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함.

3. 제안이유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인력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속 지역을 분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 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

(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대한민국 국회와
관계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서울시장 (교통실 주차계획과) : 원안가결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관리 및 단속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음

5. 이 송 처

가. 대한민국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1) 제326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市 주차계획과-9393호(2024.8.23.))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 확대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필요시 차량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2)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

-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중략)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차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1조 등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³⁾ 위반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징수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을 경찰, 지자체(시,군,구청)에 부여하고 있으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권한은 경찰에 있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⁵⁾로 각 기관별 처분 권한이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4)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본문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29. 정차·주차 금지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제32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경찰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과태료 단속, 경고장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⁶⁾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발생량(1,238만건) 중 최대 민원은 ‘불법 주정차’로 전체 민원의 약 48%(601만건)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의 부족, 시민의식 결여, 운전자 수 및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증가⁷⁾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5)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권익위 “지난해 최다 민원은 불법 주정차”, KBS 뉴스(2023.2.6.)

7) 주택가 불법 주차로 ‘몸살’…단속에 한계, KBS 뉴스(2022.4.6.)

- 서울시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주정차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한편 서울시도 광역적 단속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단속구간을 설정하여 인력단속과 CCTV(고정형, 이동형) 단속 및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제도 홍보 등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⁸⁾는 연평균 232만건 이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단속 인력 및 장비⁹⁾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과의 주정차 단속 권한을 분담하여 효율적 주정차 단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동 건의안은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주차 질서를

8)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2024년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교통지도과-5289(2024.2.7.))

(단위: 건)

구 분	평균(연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2,326,720	2,294,764	2,081,066	2,175,786	2,315,658	2,766,327
서울시	106,137	58,931	61,974	119,191	135,512	155,078
자치구	2,220,583	2,235,833	2,019,092	2,056,595	2,180,146	2,611,249

9)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2024년 교통지도·단속 종합계획, 교통지도과-5289(2024.2.7.))

(단위: 건)

구 분	단속인력					단속장비				
	계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교통 질서 계도 요원	공익 요원	계	CCTV 고정식	CCTV 탐재 차량	일반 차량	스마트폰 (PDA)
합 계	959	97	788	40	34	4,789	4,218	92	103	376
서울시	44	5	39	-	-	263	227	10	-	26
자치구	915	92	749	40	34	4,526	3,991	82	103	350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 조치 외에 새로운 불법주차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¹⁰⁾’과 같은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보에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10) No scraping this Barnacle: How NYPD’s new car booting system works (NBC New York, '24. 4. 11.)

(이 바너클을 긁으면 안됨: NYPD의 신규 자동차 부팅 시스템 작동 방식)

- NYPD,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Barnacle(바너클) 시범 도입**
- Barnacle: 불법 주차 트럭 앞 유리에 흡착하여 운전자 시야 방지, 벌금 지급해야 해제 가능